

대만 국적 비거주자(개인)에게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Q 우리나라와 대만은 22년 1월부터 조세조약이 적용된 것으로 하는데, 대만 국적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3일간 방문하여 강연을 하고, 본원에서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2. 원천징수를 한다면 내국인에게 기타소득 지급 시 처 럼 신고 하면 되는지?

A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가 되는데, 전문직업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고세대상 인데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국내세법에 규정된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대만의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아 국내세법에 따라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Q 당사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2018년~2020년까지 개정 후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 전 :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의사항 : 이 경우 2018년~2020년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경정신고를 추가할 경우 제127조 중복자원의 배제에 해당되는지요? 아님 추가 신고가 가능한지요?

A 귀사의 경우 다른 감면이 없고 투자세액공제만 있는 경우라면 물류비용세액공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정청구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지급이자 토지취득원가반영 여부

Q 법인이 분양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하였고 토지대금은 2개월 완불하였으나 계획지구라 토지등기는 4년이 지나 등기하였습니다(건물도 1년만에 완공). 차입금은 1년 마다연장하여 5년간 계속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최초 토지등기까지는 sh공사토지분양계약서로 대출하였고 토지등기후는 본토지를 근저당하여 차입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자금은 있었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5년간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반영되는 건지 아님 토지대금완불까지 반영하여야 하는건지, 정확한 지급이자에 대한 취득원가 반영을 언제까지 하는 게 맞는 걸까요?

A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취득전 이자만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등기이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Q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시 기본재산을 구입해야 양도세가 발생안되는지 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본재산 양도차익에 대해 일부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일부는 펀드및 채권(국채)구입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1.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 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처분일 현재 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제4조3항5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제2항)
2. 처분 이후에 발생한 차익으로 펀드 및 부동산구입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